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위기상황’의 사유 외에, 법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위기상황’의 사유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개정 2014.12.30.) 하였는바

이에 따른 ‘위기상황’의 사유로 인정되는 구체적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기상황’, ‘긴급지원’, ‘지원대상자’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위기상황의 사유로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 규정(안 제3조)

다. 지원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긴급복지지원법」 적용(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2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규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 별첨

3) 입법예고 : 2015. 9. 24 ~ 10. 14. 결과 : 의견 제출 없음

4) 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5) 인권 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 일부반영

○ 권고내용 및 부서 검토 결과

제 정 안	권고안 반영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생 략)	-----
2. <u>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u>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
3. ~ 9. (생 략)	1. (현행과 같음)
10. <u>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u> 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u>임신 중 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u> -----
11.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2. <u>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u>	10. <u>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u> -----

	11. (현행과 같음)
	12. <u>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u>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위임한 위기상황의 사유에 대한 규정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란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중 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대상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p>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이고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인 경우</p> <p>13. ~ 15. (생략)</p> <p><신설></p>	<p>-----</p> <p>-----</p> <p>-----</p> <p>-----</p> <p>-----</p> <p>13. ~ 15. (현행과 같음)</p> <p>1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p>
--	--

3. 영유아, 장애아동 등 보호·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종일제 보육시설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 복지협의체 사례분과 사례회의를 통하여 추천한 경우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이고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인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및 절차 등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